

Hana 1Q bank CMS^{Global} 이용 계약서

_____ (이하 “고객” 이라 합니다)과 (주)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Hana 1Q bank CMS^{Global}(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서” 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제17조(준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Hana 1Q bank CMS^{Global}” 이라 함은 “고객”이 해외 국가별 계좌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글로벌 자금관리서비스로서 글로벌 자금관리 업무(해외 국가별 계좌통합조회, 자금보고서 등)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연계은행” 이라 함은 “고객”이 “서비스”에서 조회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계좌 발급은행을 말합니다.
3. “내부시스템” 이라 함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ERP를 포함한 전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의 글로벌 자금관리업무(해외 국가별 계좌통합조회, 자금보고서 등)를 지원하는 서비스
2. “고객”의 “내부시스템”과 서비스간 각종 금융거래 연계 서비스
3. “고객”과 “은행”이 별도의 약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 (서비스의 지정)

- ① “은행”은 제3조 제1호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비스는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정합니다.
- ②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등 별도의 이용 약정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은행”과 그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절차)

- ① “고객”은 명의 확인 서류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 ② “고객”은 “은행”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절차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절차 및 기준에 따릅니다.
- ③ 제3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은 “은행”을 포함한 해당 “연계은행”에 인터넷뱅킹 서비스 신청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정보(로그인 정보 등)를 이용자의 PC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④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전산환경에 대한 보안 수준은 “은행”이 제시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 무휴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해외 영업점 및 “연계은행” 관련 거래는 해외 영업점 및 “연계은행”의 정책을 따르기로 하며, “연계은행”의 정책(인터넷 정책, 보안정책 등) 또는 사정(통신장애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수수료)

- 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도 청구 없이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현금(수표) 수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고객”의

수수료인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없이 (대체)출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아래 각 호 절차에 따릅니다.
 1. “은행”은 인상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인상 내용을 서면 통보합니다.
 2. “고객”이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인상일 14일전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고객”이 제2호 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인상일부터 변경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③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는 효력상실일에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고객”의 수수료 인출계좌에서 출금하고 부족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청구합니다.
- ④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연체된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서비스” 이용수수료 외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의 기준과 납부 방법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조회하기로 하고, “은행”은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관리)

- ① “고객”은 “은행”이 제공한 프로그램 등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② “은행”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보처리 및 관리를 제휴계약 범위 내에서 “회사”에게 위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 합니다.
 1. “고객”이 제5조 제③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
 2.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설치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객PC 등에 저장된 정보

제10조 (책임과 의무)

-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조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은행”에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은행”은 통상의 주의로 그 진정성을 확인한 후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③ “고객”은 퇴사 또는 담당직무의 변경 등 이용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권한을 지체 없이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은 제 5조 제 ④항의 보안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과 사전협의 하기로 합니다.
- ⑤ “은행”은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통신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할 시 신속히 복구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면책)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3. “고객”의 착오 또는 오류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의 경우

4. 다른 “연계은행”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 정지, 해지로 인한 거래불능의 경우
5. “서비스” 이용 PC 등에 등록한 인터넷 서비스 정보, 계좌관련 정보 등이 상이하거나 수정되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6. “고객”의 이용자 PC등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귀책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제 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과 “은행”은 상호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추가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은 불임의 “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동 “신청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제14조 (비밀유지)

“고객”과 “은행”은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 서비스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본 조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제15조 (분쟁 해결절차)

- ① “본 계약”의 해석의 차이 또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니다.
- ② 분쟁의 발생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제16조(준거법 및 합의관할)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준용 규정)

- ① “본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예금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과 당해 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및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업무규약을 준용합니다.

제18조 (특약사항)

“고객”과 “은행”은 아래의 사항을 특약으로 정합니다.

--

년 월 일

고객과 은행은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고객”]

[“은행”]

_____(법인인감)

주식회사 하나은행
